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9. 12. 2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“ 의견의 상충·대립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 의결한다. ” 를 “ 의견의 상충·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다. ” 로 함 (안 제6조 제3항)

나. “ 관계공무원 등 참석시켜 ” 를 “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” 로 함 (안 제6조 제4항)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3항 중 “의견의 상충·대립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 의결한다.” 를 “의견의 상충·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다.”로 하고, 같은조 제4항 중 “관계공무원 등 참석시켜”를 “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”로 한다.

